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12. 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11. 24. 서종수 의원 외 5명
- 나. 회부일자 : 2020. 11. 24.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위원회(2020. 12. 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서종수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
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을 도모하고,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  
사회를 조성하기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2) 급식지원 대상 (안 제3조)
- 3)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,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 (안  
제4조~ 안 제8조)

- 4) 아동급식위원회 설치,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~ 안 제17조)
- 5)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·안전 교육 등 (안 제18조)
- 6) 급식업체에 대한 지도·감독 등 (안 제19조)

### 3. 검토보고 (조광현 전문위원)

○ 본 제정조례안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.

○ 2016년도 한국보건사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의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아동(18세 미만)과 청년(18~25세), 노인(65세 이상) 등 연령별 빈곤율을 비교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이고 아동 빈곤율과 청년 빈곤율도 비율은 OECD 평균 절반 수준으로 하위 5위에 해당됩니다.

○ 과거의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보호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해 왔으나, 최근 아동의 빈곤, 결식, 학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복지서비스가 도입·시행되고 있습니다.

○ 이에 따라 2011년 8월 「아동복지법」이 전부 개정되고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(법 제35조).

○ 이러한 배경에서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아동급식 지원의 목적, 지원기준, 조사위원회 운영 등의 절차를 제정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조례안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 판단됩니다.

○ 아동급식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서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1) 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제외된 사업입니다. 현재 아동급식은 「아동복지법」 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정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역별로 지원 형태·규모·내용이 각기 다른 상황입니다.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에 따르면 “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
1) ▶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9조(보조금의 대상사업·기준보조율 등)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, 경비의 총목,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▶ 「보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4조(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)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(이하 "기준보조율"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

다만,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.

※ 별표 2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.

○ 2020년 11월말 현재,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인접구인 서대문구, 은평구를 비롯하여 14개구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

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의하였고, 안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지정을,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급식지원 방법 및 신청,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1에서 4로 규정하였습니다.

안 제 9조에서 제17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, 안 제 18조 및 19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·안전교육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습니다.

○ 검토의견입니다.

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

다만, 기 제정 되어 시행중에 있는 교육지원과 소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와 비교하여 볼 때 급식 지원대상,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대상이 중복되거나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으로 집행부에서는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상호 협조·보완하여 아동급식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

[표 1]

## 마포구 결식아동 및 급식 제공업체 현황

지원대상자 현황

<2020. 11. 기준>

지원 대상 구분	인원(명)
단체급식소(지역아동센터)	245
꿈나무 카드 (동주민센터 신청자)	760
도시락 지원	120
<b>계</b>	<b>1,125명</b>

급식제공 꿈나무 카드 가맹점 : 103개 업체 <2020. 11. 기준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